

천장크레인 레일 설치작업 중 추락

신축공장에서 2.8톤 천장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해 작업자 4명이 작업을 하던 중 재해자가 폭 20cm의 H-beam 상부 레일을 따라 이동하던 중 몸의 무게중심을 잃고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



발생 원인

- 추락방지조치 미 실시
 -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 설치
- 개인보호구 미 착용

TIP

안전작업

1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

- 천장크레인 주행로 등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는 안전대 걸이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실시

2 개인보호구 착용

-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



추락방지용 안전대 걸이대(Life Line)

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(보호구의 지급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(추락의 방지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




천장크레인 레일 설치작업 중 추락

추락위험장소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세요!

